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616 발의연월일: 2024. 7. 11.

발 의 자 : 윤준병 • 민형배 • 박민규

이성윤 • 박희승 • 허종식

서영교 • 이재관 • 문정복

이해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OECD 통계에 따르면,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0년 기준 연간 1,927시간으로서 OECD 국가 평균인 1,582시간에 비해 연간 345 시간 더 일하고 있음. 이러한 장시간 노동으로 연간 500명 이상이 과 로사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.

또한, 과로사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「뇌혈관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(고용노동부 고시)」은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의기준으로 발병 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(발병 전 4주동안 1주 평균 64시간)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음.

따라서 일반적인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비하여 업무 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나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 실정임.

이에 장시간 근로의 위험성을 전사회적으로 인식하고, 과로사나 과 로성 질환을 전국가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를 실현하도록 해야 할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'과로사'를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·정신적 부담에 따라 발생한 과로성 질환의 발생이나 기존 질환의 악화, 또는 이에 따른 장해 발생으로 인하여 사망·자살하는 것으로, '과로사등'을 과로사와 과로성 질환을 포함한 개념으로 각각 정의함(안 제2조).
- 나. 과로사등의 발생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 원칙, 국가 등의 책무, 국민과 사용자의 책무 등을 규정함(안 제3조 부터 제5조까지).
- 다. 고용노동부장관이 3년마다 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, 이를 기초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가 매년 연도 별 과로사등 예상 시행계획을 수립대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7조 및 제8조).
- 라. 고용노동부장관이 과로사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, 과로사등의 인과관계에 관한 조사·연구를 실시하도록 함(안 제9조 및 제10조).

- 마. 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등 중앙행정기관 간의 과로사 등 예방 대책을 조정하고 근로자 ·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'과로사등 예방대책협의회'를 두도록 하고, 과로사등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 유족이 피해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함(안 제11조 및 제12조).
- 바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과로사등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·홍보를 실시하고, 과로사등의 예방을 위한 상담을 수행하도록 함(안 제13조 및 제14조).

법률 제 호

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업무의 과중한 부담으로 발생하는 과로사와 그 주요 원인이 되는 장시간 노동 및 질환 등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로사로 인한 개인적 피해와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고,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, 궁극적으로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과로사"란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·정신적 부담으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(이하 "과로성 질환"이라한다)으로 인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.
 - 가. 뇌혈관 질병, 심장 질병, 신경정신계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 질환 또는 정신적 질환(이하 "과로성 질환"이라한다)의 발생
 - 나. 기존 질환의 자연속도 이상의 악화

- 다.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신체적 장해 또는 정신적 장해의 발생라.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심리적 부담에 의한 자살
- 2. "과로사등"이란 과로사와 과로성 질환을 말한다.
- 3. "근로자"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.
- 4. "사업주"란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.
- 제3조(기본원칙) ① 이 법은 과로사등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, 과로사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, 과로사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 제고가이루어져야 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조사·연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로사등을 예방하기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기본 원칙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등 과로사등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(이하 "과로사등 예방 대책"이라 한다)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야 한다.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등 예방 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 기 위하여, 공공기관·사용자·국민과 상호 협력하고 정보의 제공

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등의 예방을 위하여 「근로기준법」 제50조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.
- 제5조(국민과 사용자의 책무) 국민과 사용자는 과로사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과로사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 등 과로사등 예방 대책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
- 제6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과로사등의 예방과 그에 관한 대책의 수립 ·시행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

- 제7조(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과로사등 예방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과로사등 예방 대책의 추진목표ㆍ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 - 2. 과로사등 예방 대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

- 3. 과로사등 예방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
- 4. 과로사등 위험집단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
- 5. 업종별 근로시간과 과로사등 실태조사 및 조사·연구에 관한 사항
- 6. 과로사등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
- 7. 그 밖에 과로사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제11조에 따른 과로사등 예방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·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과로사등 예방 시행계획 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.

③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제출과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장 과로사등 실태조사 및 예방

- 제9조(과로사등 실태조사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과로사등의 발생규모 와 추세를 파악하는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업종별 근로시간 및 과로사등 실태조사(이하 "실태조사"라 한다)를 실시하여야 하고,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그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과로사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「통계법」을 준용한다.
 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, 관련 기관·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 - ③ 실태조사의 시기, 내용, 범위,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조사·연구 등) ① 정부는 과로사등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하여 과로사등에 관한 통계를 수집·분석 및 관리하고 근로조건·작업환 경·조직구조·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과로사등의 원

- 인을 규명하는 등 과로사등에 관한 조사 ·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·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·시설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 조사·연구 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- 제11조(과로사등 예방대책협의회) ① 중앙행정기관 간의 과로사등 예방 대책 조정 및 근로자·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통한 과로사등 예방 대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과로사등 예방대책협의회(이하"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각 위원은 비상근 위원으로 한다.
 -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- 1. 기획재정부장관, 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청장,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
 - 2.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
 - 3. 그 밖에 과로사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
 - ④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는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.
 - ⑤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(피해자단체) ① 과로사등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과로사

-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(이하 "피해자단체"라 한다)는 과로사 등 발생시 협의회의 심의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- 제13조(과로사등 예방을 위한 교육·홍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등이 근로자 및 그 가족, 사회에 미치는 위해와 과로사등 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14조(과로사등 예방을 위한 상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로 사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과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,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 정하는 기관·단체 또는 시설에 과로사등의 우려가 있는 사람이나 그 가족 등에게 과로사등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여 야 한다.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고, 상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·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관한 사항, 상담의 방법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4장 보칙

- 제15조(국회에 대한 보고)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3년마다,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평가된 추진실적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6조(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) ① 고용노동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에 과로사등 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제17조(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등의 예방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